

제31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

경제건설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2025. 2. 24.(월)



경제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송창훈

목 차

1. (재)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

(재)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 2631호
- 제 출 일: 2025년 2월 4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5년 2월 13일

2. 제안사유

- 달성군 내 유휴공간인 (구)다사치안센터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권역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

이에 문화도시센터 위탁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(재)달성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위탁시설 사용료 면제 동의 요청
 - 법 인 명 : (재)달성문화재단
 - 사용기간 : 2025. 2. ~ 2026. 2.(기간만료 후 재심의)

- 위탁시설

재산의 표시				사용목적
소재지		구분	면적(㎡)	
다사읍 매곡리	719-19	토지(대지)	295	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(다사·하빈권역)
		건물	202.54	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유희공간인 (구)다사치안센터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권역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위탁기간 만료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.
-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권역 거점 공간 확보로 ‘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’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